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29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박홍배 · 한정애 · 이광희
김남근 · 김태년 · 김우영
이정현 · 김영환 · 박 정
김한규 · 민병덕 · 박정현
정태호 · 김현정 · 이수진
최혁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5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아울러 금융취약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책을 강화함으로써(안 제22조제4항),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22조제3항, 안제22조제4항).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복지 등의”를 “복지·금융생활 등의”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이하 “회생절차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청년의 원활한 절차 진행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등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거·고용·복지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
3. 그 밖에 회생절차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금융생활, 채무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 · 교육 · <u>복지</u>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 7. (생 략)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복지 · 금융생활</u> 등의----- -----. 6. · 7. (현행과 같음)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이하 “회생절차 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청년의 원활한 절차 진행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1. 회생절차등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u> <u>2. 주거 · 고용 · 복지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u>

<u><신 설></u>	<u>3. 그 밖에 회생절차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금융생활, 채무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	---